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5조,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의한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할 경우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정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17	☎ 02-745-8286 http://www.fkmp.kr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

※ 지정요건의 취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본문의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 제18조 제2항 규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때 영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운영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 가능한 것으로 정관 개정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2025년 6월까지 전무이사의 총회 소집권을 정관에서 삭제할 것

아. 2025년 6월까지 전무·사외·사원이사의 회장 선출 권한을 정관에서 삭제할 것

자. 2025년 6월까지 보상금관리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임권자를 변경할 것

- 전무이사 4인 → 회장 2인, 저작권위원회 2인

차. 2025년 6월까지 해외권리자 DB 등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카. 2025년 6월까지 2025년 전무이사 등 직원 휴가비를 축소할 것

* '23년 3.46억원(1인당 9백) → '24년 3.68억원(1인당 1천) / 전무 '23년 2.1천 → '25년 2.5천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